

■ CJ 온스타일 위탁매입 기본계약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_20260414

현행	개정안
제14조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CJ"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CJ"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CJ"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협력사"를 공개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협력사"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행사의 자발성·차별성을 인정하여 제5항과 마찬가지로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부담비율 조정 가능